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사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.

2021년 3월 10일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행정명령사항

가. 처분기간 : 2021. 3. 10.(수) ~ 2021. 3. 24.(수) (15일간)

나. 처분대상 : 인천광역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

다. 처분내용

- 외국인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것.

라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

마. 처분이유

-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증가에 따른

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통해 감염확산 사전 차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필요.

바. 처분내용

- 외국인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할 것.

▶ 검사장소 : 사업장 소재지 보건소선별진료소, 인천시임시선별검사소

▶ 검사비 : 무료

※ 단, 2021. 2. 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.

(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)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,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문의처 :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(☎032-440-4104)
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(☎032-440-7838, 7849).
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(☎032-120)
사업장 소재지 군구 보건소선별진료소(붙임 참조). 끝.

인천광역시 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현황

연번	문의처	전화번호
1	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760-6050
2	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770-6316
3	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880-5333~5
4	연수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749-8176
5	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453-8430
6	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509-3100
7	계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430-7821
8	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560-5000
9	강화군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930-4007
10	옹진군보건소 선별진료소	032-899-3130

인천광역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

연번	시군구명	설치 위치(주소)	운영시간
1	미추홀구	주안역임시선별검사소 (미추홀구주안로95-19)	(평일)09:00~17:00 (주말)9:00~13:00
3	남동구	중앙공원임시선별검사소 (예술로149문화예술회관계단아래쪽)	(평일)09:00~17:00 (주말)9:00~13:00
4	부평구	부평역임시선별검사소 (부평구광장로16)	(평일)09:00~17:00 (주말)9:00~13:00
5	계양구	작전역 공영주차장임시선별검사소 (계양구작전동)	(평일)09:00~17:00 (주말)9:00~13:00
6	서구	검암역임시선별검사소 (서구검바위로26)	(평일)09:00~17:00 (주말)9:00~13:00
8	연수구	송도미추홀타워 앞 임시선별검사소 (연수구갯벌로12)	(평일)09:00~17:00 (주말)9:00~13:00